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1. 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1. 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민 의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4km²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의제대상 확대

가.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

개정안은 기지정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u>지정한다</u>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_____ _____ _____ _____지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_____ _____ _____.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우선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고, 이 때 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과 주요 유치업종, 유치업종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하게 됨.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현행법 제4조제3항¹⁾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제외한 3종을 뜻함)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③)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④)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⑤)를 거쳐 이를 지정·고시함.

[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시·도지사, 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 ② 시·도지사,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등)→ ③ <u>(산단포합시) 시·도지사-국토부장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u>→ ④ 시·도지사, 산업부장관에게 경자구역 지정 신청→ ⑤ <u>산업부장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u>→ ⑥ 산업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⑦ 산업부장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⑧ 산업부장관, 관보고시 및 시·도지사 통보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산업단지(가목), 일반산업단지(나목), 도시첨단산업단지(다목), 농공단지(라목)

그런데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이나, 산업단지로 기지정된 지역에 대한 추가절차(③)는 현행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제4조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²⁾.

[표 3] 기지정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경우 절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u>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산업단지로 기지정된 구역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이미 거친 바 있고, 이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특히 지정권자가 국가, 즉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³⁾인 경우

2) 참고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청(강원, 충북)도 행정절차 간소화 목적으로는 제4조제4항은 현행유지하고 제4조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유형 및 지정권자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¹⁾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¹⁾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에는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3~6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이를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권자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지속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이 같은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하면 제4조제3항후단에 괄호로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경우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수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4)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의제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여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6제1항제12호 신설).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 ----- -----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의6은 개발절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함.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⁵⁾에 대하여도 이러한 의제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있음⁶⁾.

즉, 개정안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변경할 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산업자원통상부장관간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도 거치는 것은 중복적인 것으로 보아 이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

5)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계획, 산업유치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변경되도록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부적정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복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고,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2022년부터 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도 의제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건의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⁷⁾.

7) 관련 기관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22.11.24.)	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의제사항 추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의제범위 재확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도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실시계획을 조속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39. (생략) <u><신설></u>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 ----- ----- 1. ~ 39. (현행과 같음) 40. 「 <u>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u> 」 제17조에 따른 <u>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1조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 중 제11조제1항제19호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2020년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⁸⁾하였고, 동 법률의 인허가의제 대상 중 항만재개발사업자의 지정,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제19호에서 삭제된 것으로, 기존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도 의제되고 있었음.

[표 6] 2020년 「경자구역법」 제11조제1항 인허가의제 범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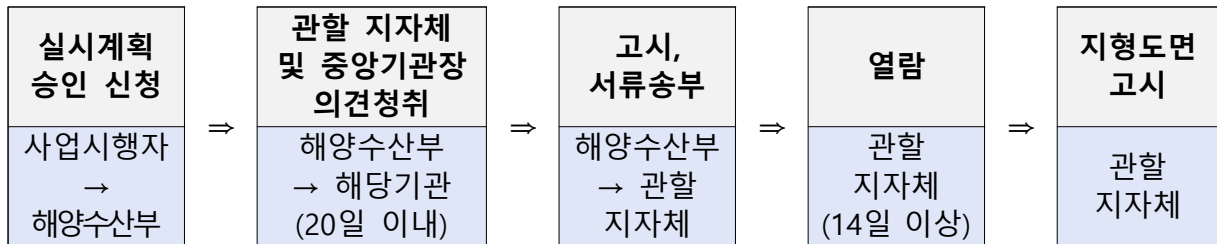
법률 제16407호 [시행 2019. 11. 1. ~ 2020. 7. 29.]	법률 제16902호 ~ 현행 [시행 2020. 7. 30. ~]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u>같은 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u>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현행법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승인을 별도로 받게 되면서 최초 승

8)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제정]

인시 1년, 변경 승인시 3~6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어 종전에 비해 항만 재개발지역의 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행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표 7]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



현행법이 의제하고 있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과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목적·성격·내용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개정안과 같이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도 다시 의제하는 것은 적절한인 것으로 보이고,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⁹⁾임.

9) □ 해양수산부 검토의견 : 수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기 규정된 사항이었으나, '20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분법 과정에서 삭제*된 의제 규정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
- 경제자유구역 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정안 동의

2.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가. 기 준공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시·도지사 실시계획 작성

개정안은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없더라도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표 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¹⁰⁾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u>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시·도지사가 우선 경제자유구역 또는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지 2년 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후 1년 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성실하게 해당 구역을 개발하도록 함.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

10)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아야 하고, 준공검사 및 준공승인 후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준공완료된 지구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됨.

이 후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승인하는 거쳐야 함.

그런데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동법 제8조의3 제1항제5호, 이하 “SPC”(Special Purpose Company)) 등이 지정될 수 있고¹¹⁾, 이 중 SPC의 경우 개발사업이 준공완료되면 해산하도록 되어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
 - 가. 해당 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 나.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5.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비용의 합이

있음.

이 경우 SPC가 개발한 지구는 시·도지사에게 작성·제출할 사업시행자가 이미 해산되어 부재하므로, 사업시행자 재선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함.

계획작성만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하고 변경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준공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모든 준공지구에 대해 시·도지사가 작성·승인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한다)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권한 확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규제혁신과제 발굴’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원’까지로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시·도 지사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및 안 제27조의8).

[표 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¹²⁾ 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u>발굴</u> 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u><신설></u>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발굴 및 지원</u> ----- 5. ~ 9.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u> <u>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12)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계획, 발전계획 수립과 더불어 핵심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 및 제도상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참고1 참조)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입지혜택 위주로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구역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고, 이 중 일부 구역청은 스마트제조산업, 미래모빌리티 산업, 스마트수송기기 산업 등 신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비수도권 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입지혜택¹³⁾¹⁴⁾을 제공할 예정임.

이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자유특구를 추가지정하도록 유도하여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혁신 3중세트 특

-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3)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익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임주, 50년 장기임대 허용,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

14)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2021. 11. 8.
<https://www.fez.go.kr/portal/magazineDetail.do?boardSeq=64790>

례와 재정지원(참고3 참조)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자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게도 부여하고, 구역청장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가 다소 정체되는 추세이므로, 보다 중점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규제혁신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와의 정합성¹⁵⁾을 고려하면 비수도권에 소재한 구역에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¹⁶⁾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1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동**”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16)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4.10.7.)	• 동 개정안은 중기부-산업부간 전략적 협업을 위한 세부과제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개정방향에는 원칙적 동의 * 국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시행(‘24.2) • 다만,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19.4월)된 바 있으며, -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지사(기초지자체 포함)에 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도입 취지, 입법 체계 등을 고려해 볼때 <u>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에 한해</u>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3.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8제1항제2호 및 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표 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u>설치비용</u> 에의 충당	2. ----- <u>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생략)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

현행	개정안
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시도·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 ----- ----- ----- ----- <u>법 제18조제1항</u> ----- ----- -----
19. ~ 27. (생략)	19. ~ 2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우선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및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발이익을 사용하도록 함.

그리고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주요 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¹⁷⁾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¹⁸⁾에 따

1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기반시설 설치 국고 지원 사업 목록

- 기타 기반시설 지원(2733-409) (국비:지방비 5:5)
- 주요기반시설지원(2733-415) (국비:지방비 5:5)
- 인천경제자유구역진지컨벤션센터건립(BTL)(2733-447) (국비:지방비 4:6)

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
3.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4. 공원·녹지
5.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분담하고 있음. 준공된 완료된 기반시설은 시설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하여 운영·관리업무 및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반시설·공공시설의 관리자로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이익으로도 충당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숙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이 이미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의 적절한 투자 대상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투자 범위 확대는 다소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⁹⁾.

다음으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해 각각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라 기업·근로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전·입주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19) 관련 기관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21.11.29.)	• 경제자유구역법에 <u>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개발이익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u> 근거조문 마련

그런데 동 법률은 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비해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의 유형 및 범위는 포괄적이므로, 동 법률의 목적 및 취지보다 다소 넓은 범위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특구의 형평성, 다른 예산사업으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⁰⁾.

20) 타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4.10.7.)	-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 국고 지원” 특례 既 적용중으로 추가적인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은 유사특구(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우려 -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은 타 사업으로도 지원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 - 기업지원시설: 산업별 기업 지원 사업군, R&D 기반구축 사업군 등 (문화시설) 산업부 산단환경조성, 문화부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지원 사업군 등

○ 산업부입장 :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의 안 제18조제2항 삭제 의견은 지속 협의 추진

4. 타 법상 특례 등 법문언 정비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토지수용 관련하여 재결신청기한을 ‘개발사업시행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안 제13조제2항) 동 법률의 법문언을 정비하고자 함.

[표 1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략)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 지사가 결정한다.	<삭제>
제13조(토지수용) ① (생략)	제13조(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u>기간</u> 내에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_____ _____ _____ _____ <u>개</u> <u>발사업의 시행기간</u> --. ③·④ (현행과 같음)

우선, 2009년 2월 이전의 舊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동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2009년 2월에 舊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고 종전의 같은 항 제4호가 제2호로 개정되었는데, 현재까지 동 법률에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9조제2항의 특례가 사문화되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제처는 2018년, 2024년 각각 「국토계획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²¹⁾.

[표 12] 2009년 「국토계획법」 제29조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9401호(시행 2009. 1. 30.)	법률 제9442호(시행 2009. 2. 6.)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② (중 략)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② (중 략)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삭 제)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삭 제)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제39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삭 제)

21)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법제처 (‘18년, ’24.10.11.)	국토계획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개정)

다음으로, 현행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 실무상 경제자유구역개발기간에서 “재결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개발사업시행기간”동안 재결 신청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

법문언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의 의미가 별도로 재결신청기간을 해당 계획에서 정하도록 한 것인지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과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 부여 등 관련 제도 및 법문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

로 축소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붙임]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수정안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관계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범위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며,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지원 조항을 삭제함.

그리고 다른 법률상 인·허가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인·허가 의제 개정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실제 모든 준공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작성·승인할 필요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함(안 제4조).
-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다.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인·허가 의제 개정조문 위치를 변경함(안 제11조).

라.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제18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18조 및 제27조).

마.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범위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함(안 제27조의8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전단 중 “지정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정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6항 중 “준공된”을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0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안 제18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안 제27조제17호 및 제18호의 “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법 제18조”로 한다.

안 제27조의8 중 “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로 하고, “시·도지사”를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u>산업단지</u>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u>

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④ -----

지정한다(「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
조 및 제7조의2에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④ -----

지정한다. -----

의견을 들어야 한다.	<u>따라 지정된 산업</u> <u>단지의 경우는 제</u> <u>외한다).</u> ----- ----- ----- ----- ----- -----	----- -----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⑤ ~ ⑨ (개정안과 같음)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생략)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u>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u>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② ~ ⑤ (생략)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생략) <u><신 설></u> 제27조(지방자치단체	<u>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27조(지방자치단체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u>현행과 같음</u>) <u><삭 제></u> 제27조(지방자치단체
---	--	---

136조, 제137조	-----	-----
및 제144조에 따	-----	-----
른 도시·군계획	-----	-----
시설부지의 매수	-----	-----
청구, 개발행위	-----	-----
의 허가, 도시·	-----	-----
군계획시설사업	-----	-----
의 시행, 단계별	-----	-----
집행계획의 수립	-----	-----
및 이행강제금	-----	-----
의 부과·징수,	-----	-----
토지에의 출입,	-----	-----
청문, 보고·검	-----	-----
사 및 과태료 부	-----	-----
과·징수 등에	-----	-----
관한 사무(도시	-----	-----
·군계획시설부	-----	-----
지의 매수청구,	-----	-----
단계별 집행계획	-----	-----
의 수립 및 도시	-----	-----
·군계획시설사	-----	-----
업의 시행에 관	-----	-----
한 사무는 이 법	-----	-----
제6조의 경제자	-----	-----
유구역개발계획	-----	-----
에 따른 개발사	-----	-----

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 ----- ----- ----- -----	----- ----- ----- -----
19. ~ 27. (생략)	19. ~ 27. (현행과 같음)	19. ~ 2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u>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u>

		<u>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6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 계획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8제1항제2호 중 “설치비용에의”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3조제2항 단서 중 “기간”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4제4호 중 “발굴에”를 “발굴 및 지원에”로 한다.

제2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u>산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입단은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 ----- ----- -----.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의 변경) ① -----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생략)

<신 설>

[illegible]

1. ~ 11. (현행과 같음)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의 충당

② · ③ (생략)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1. (현행과 같음)

2.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9의2. (생략)

<신설>

20. ~ 39.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

1. ~ 19의2. (현행과 같음)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0. ~ 3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신설>

---.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발굴 및

지원에-----

5. ~ 9. (현행과 같음)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
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
정을 신청할 수 있다.